



의안번호	제87호
------	------

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4명
제출연월일	2022. 8. 19.

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의안 번호	제87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19.

대표발의자 : 서승필

공동발의자 : 이태모, 조배식,
장진호, 윤금숙

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시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대상(안 제2조)

다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시 여비 지급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입법예고 : 2022. 08. 19. ~ 08. 23.(5일간)

□ 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수당) ① 논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문제의 출제·선정·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
2.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
3.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
②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조 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승필 의원 외 4명

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